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2
----------	------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혜경 의원(1명)

찬 성 자 : 우미경, 이상목, 김제리, 남재경,
황준환, 이명희, 신건택, 주찬식,
이복근, 박성숙, 박마루, 김현기,
김창원, 김진수, 김용석(서초),
최호정 의원(16명)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동 조례는 2005년 3월 17일 제정 당시 기존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로 운영되고 있었던 교향악단 등 7개 예술단체가 다른 국·공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외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예술단체를 국내 최고수준의 예술단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자율적 조직 및 경영시스템 도입과 함께 예술단체별 독립 법인화 근거조례를 마련하여 각 단체의 수준향상 및 발전과 획기적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된 것임.
-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산하 예술단체 중 시립교향악단 외에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설립된 재단 모두 각 재단의 설립근거가 조례명에서부터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치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없

는 기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법인화 이후에 예산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예산의 증가와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종합보고서’에 의하면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2013년에는 ‘라’등급, 2014년 ‘다’등급, 2015년 ‘라’등급으로 매년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와 더불어 최근 박현정 전(前)대표이사과 정명훈 전(前)예술감독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시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이 아니라, ‘정명훈 전예술감독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으로서의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립교향악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현 대표이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독립법인으로 존속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보다 서울시의 다른 예술단과 마찬가지로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예술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 및 단원의 고용과 관련된 제반조치를 위해 동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 부트로 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